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80 |
|----------|----|

2018. 12. 14.(금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5일

(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재난안전실장 오진섭)

가. 제안이유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 반영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재난안전대책본부 목적 변경(안 제1조)

-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
-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·조정

### ○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변경(안 제2조)

-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·조정
-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

### ○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규정 (안 제7조)

-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
  - 하절기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  - 동절기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

-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

### ○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변경 (안 제9조)

-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
-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

### ○ ‘위기경보 발령’과 ‘재난 예·경보 실시’구분(안 제17조, 안 제18조)

### ○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[별표3]

- 자연재난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[별표 4]의 가동 기준에 지진·화산 분야 추가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#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·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1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음.
- 안 제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함.
-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하절기와 동절기 기간 중 자연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과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7조 및 제8조는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위기경보와 재난 예보·경보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8. 31.~'18. 9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·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 총괄·조정
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
3.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
4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·재정상 조치 요구
5. 시·군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장 지휘 및

## 수습지원

6.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실시
7.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
8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와 연계된 업무
9.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대책본부의 구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대변인,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.

② 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대변인,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본부장: 도지사
2. 차장: 행정부지사
3. 총괄조정관: 재난안전실장
4. 대변인: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
5. 통제관: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·국장 및 소방본부장. 다만, 해당 실·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
6. 담당관: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

③ 본부장은 충청북도 공무원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(이하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)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부장 :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업무 총괄
2. 차장: 본부장 보좌
3. 총괄조정관: 재난상황관리,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, 본부장 및 차장 보좌
4. 대변인: 재난 수습홍보 총괄
5. 통제관: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
6. 담당관: 통제관 보좌,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
7. 실무반: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

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5조(직무대행)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사무의 전결사항)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.



제7조(대책본부 운영기간)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
가. 하절기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
나. 동절기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

2.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대책본부 편성기준)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재난: 별표 4

2. 사회재난: 별표 5

3.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: 별표 6

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(이하 “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상황판단회의)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본부장 등”이라 한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.

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.

1. 대책본부 운영 여부
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
  3. 재난상황의 심각성, 전개속도, 지속기간, 파급효과,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
  4.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1.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·국장
2. 해당 재난 관련부서의 장
3.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(민간단체를 포함한다)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
4.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)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·소속·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파견근무자의 복무 등)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)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.

제13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,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.

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본청의 실·국장 및 소방본부장, 정책기획관, 공보관
2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

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장이 된다.

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(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)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)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,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

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)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·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.

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재난현장의 피해상황,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
2. 구조·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
3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 설치 상황
4. 지역주민 대피 및 시·군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수습 상황
5.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

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난현장 조치)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위기경보의 발령 요청)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 본부장이 예보·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
2. 기상상황, 홍수정보, 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
3.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
4.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

제19조(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 ① 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20조(재난수습 홍보)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, 정보공유·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

2.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
3. 법 제16조에 따른 시·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
4.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
5.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
6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,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실무반의 임무(제4조제1항제7호 관련)

1. 자연재난의 경우

| 구 분            | 업무와 역할  |
|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| 1) 재난정보<br>· 수집 ·<br>분석 및<br>전파, 재<br>난상황관<br>리팀<br>가)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<br>나)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<br>다)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<br>라)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<br>마) 대책본부장·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, 현장방문<br>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<br>바)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<br>사) 화상회의 준비·운영<br>아)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·운영   |
| 가. 상황관리<br>총괄반 | 2) 상황보고서<br>작성팀<br>가) 일일상황보고서 작성·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<br>나)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<br>다) 피해정보의 수집·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·<br>분석<br>라)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<br>(1) 태풍·호우: 펌프장 가동, 저류지 확보, 기상변동<br>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<br>(2) 대설: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<br>(3) 지진(지진해일):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<br>지진정보 파악<br>마)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<br>바) 인명·재산 피해상황 관리<br>사)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<br>아)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<br>자) TV 방송 모니터링<br>차) 민심동향, 미담사례 등 확인 |
|                | 3) 상황관리<br>총괄 및<br>가)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<br>나)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·관리   |

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 | <p>상황분석<br/>평가팀</p>      | <p>다)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·보고<br/> 라) 대책본부장·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<br/> 마) 비상근무 단계 결정<br/> 바)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<br/> 사)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<br/> 아) 재난발생지역의 예보·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<br/> 자) 상황근무자 근무명령<br/> 차) 상황근무자 식사·야식 등 후생·복지<br/> 카)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·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<br/> 타)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<br/> 파)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: NDMS)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</p> |
|                 | <p>4) 행정지원팀</p>          | <p>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</p>   |
| <p>나. 협업기능반</p> | <p>1) 긴급생활<br/>안정지원반</p> | <p>가) 재해구호기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·지급 독려<br/> 나)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·관리(수용·급식 등)<br/> 다)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<br/> 라)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<br/> 마)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<br/> 바)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, 응급생계구호 실시</p>   |
|                 | <p>2) 재난현장<br/>환경정비반</p> | <p>가)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(재난폐기물, 위험물 등)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·관리<br/> 나)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br/> 다)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(운동장, 공원, 폐기물처리시설 등) 설치·운영의 지도·확인<br/> 라) 각 부서 및 시·군 복구현황 파악</p>   |
|                 | <p>3) 긴급통신<br/>지원반</p>   | <p>가)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<br/> 나)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<br/> 다)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</p>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라) 각 부서 및 시·군 복구현황 파악 |
| 4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| 가) 공공·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<br>나) 공공·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br>다) 각 부서 및 시·군 복구현황 파악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5) 에너지공<br>급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| 가)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(가스, 전기, 유류 등)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<br>나) 시설·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br>다) 가스, 전기,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<br>라) 각 부서 및 시·군 복구현황 파악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6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| 가)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<br>나) 텔레비전·라디오·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·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<br>다)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<br>라) 언론발표 준비·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<br>마) 취재지원센터 운영(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)<br>바)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<br>사) SNS,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<br>아) 오보,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<br>자) 현장, 중앙대책본부, 수습본부, 시·군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|                       |
| 7) 재난관리<br>자원지원반          | 가)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<br>나)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(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: DRSS)가동<br>다)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<br>라) 장비·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<br>마) 다른 지역의 장비,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,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<br>바) 재난관리자원의 비축,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8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| 가)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<br>나) 육상,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<br>다) 교통두절구간(도로, 해상, 항공) 실태 파악 보고<br>라) 연안여객선,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| <p>마)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</p> <p>바)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</p> |
| 9) 의료·방역서비스 지원반      | <p>가) 재난발생지역 의료·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</p> <p>나) 재난발생지역 의료·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</p> <p>다)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</p> <p>라)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·운영 지도·확인</p> <p>마)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·위생관리 지도·확인</p> <p>바)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·운영</p> |  |
| 10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 | <p>가)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도·확인</p> <p>나)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</p> <p>다)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</p> <p>라)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</p>   |  |
| 11) 사회질서 유지반         | <p>가)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</p> <p>나)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</p> <p>다)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</p> <p>라) 주민대피, 범죄예방 사전조치</p> <p>마)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·지원</p>  |  |
| 12) 수색, 구조·구급반       | <p>가) 재난지역 인명 수색, 구조·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</p> <p>나)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, 안치 지원</p> <p>다) 재난현장의 특성,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</p> <p>라)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·운영 지원</p> <p>마) 군부대 등 수색,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</p>  |  |
| 다.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| <p>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·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</p>   |  |

2. 사회재난의 경우

| 구 분            | 업무와 역할   |  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가. 상황관리<br>총괄반 | 1) 상황관리<br>총괄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)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<br>나)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<br>다) 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<br>라)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|
|                | 2) 수습상황<br>파악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) 재난발생현황, 구조인력·장비 투입 현황 파악<br>나)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<br>다)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·처리<br>라) 사고수습본부, 시·군 대책본부, 긴급구조통제단<br>운영상황 관리<br>마)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<br>바)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<br>사) 각종 여론·정보 수집, 민원 등 파악 |
| 나. 협업기능<br>반   | 1)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연재난 협업기능반<br>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 |
|                | 2)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3) 긴급통신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4)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5) 에너지공급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6) 재난수습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7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8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9) 의료·방역서비스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10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11) 사회질서 유지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12) 수색, 구조·구급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다. 재난대응협업반     |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<br>수행              |   |
| 라. 현장지원반       | 수습본부,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<br>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|   |

[별표 2]

재난수습 주관부서(제4조제2항 관련)

| 재난관리<br>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| 충청북도<br>주관부서   |
|--------------|--|--|
| 1. 교육부       | 가.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| 청년정책담당관  |
|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가. 우주전파 재난<br>나. 정보통신 사고<br>다.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<br>라.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<br>마.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 | 정보통신과<br>정보통신과<br>정보통신과<br>정보통신과<br>정보통신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부       | 가.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| 국제통상과  |
| 4. 법무부       | 가.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| 사회재난과  |
| 5. 국방부       | 가.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| 안전정책과  |
| 6. 행정안전부     | 가. 정부중요시설(도 청사) 사고<br>나.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<br>다. 풍수해(조수는 제외한다)<br>라. 지진<br>마. 화산<br>바. 낙뢰<br>사. 가뭄<br>아. 공동구(共同溝) 재난(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) - 우리 도 '오창 신도시' 해당 | 회계과<br>사회재난과<br>자연재난과<br>자연재난과<br>자연재난과<br>자연재난과<br>자연재난과<br>균형발전과 |
| 7. 문화체육관광부   | 가.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<br>나.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<br>다.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| 체육진흥과<br>문화예술산업과<br>관광항공과  |
| 8. 농림축산식품부   | 가. 가축 질병<br>나. 저수지 사고  | 동물방역과<br>유기농산과   |
| 9. 산업통상자원부   | 가.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<br>나. 원유 수급 사고<br>다. 원자력안전 사고(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 다)<br>라. 전력 사고<br>마.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| 에너지과<br>에너지과<br>에너지과<br><br>에너지과<br>에너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---|---|---|
| 10. 보건복지부    | 가. 감염병 재난<br>나. 보건의료 사고   | 보건정책과<br>보건정책과  |
| 11. 환경부      | 가.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<br>나.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<br>다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<br>라.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<br>마. 황사  | 환경정책과<br>수질관리과<br>기후대기과<br>수질관리과<br>기후대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고용노동부    | 가.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| 일자리정책과  |
| 13. 국토교통부    | 가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<br>나. 고속철도 사고<br>다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<br>라. 도로터널 사고<br>마. 식용수(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) 사고<br>바. 육상화물운송 사고<br>사. 항공기 사고<br>아.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<br>자.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| 균형발전과<br>교통정책과<br>자연재난과<br>도로과<br>수질관리과<br>교통정책과<br>관광항공과<br>관광항공과<br>건축문화과 |
| 14. 해양수산부    | 가. 조류 대발생(적조에 한정한다)<br>나. 조수(潮水)  | 수질관리과<br>환경정책과  |
| 15. 금융위원회    | 가.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| 경제기업과   |
| 16. 원자력안전위원회 | 가. 원자력안전 사고<br>나.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| 에너지과<br>에너지과  |
| 17. 문화재청     | 가. 문화재 시설 사고  | 문화예술산업과   |
| 18. 산림청      | 가. 산불<br>나. 산사태   | 산림복지과<br>산림복지과  |
| 19. 소방청      | 가. 화재<br>나. 위험물사고<br>다.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| 소방본부<br>소방본부<br>소방본부  |

비고: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

[별표 3]

대책본부 전결사항

| 일련<br>번호 | 사무내용            | 업무내용              | 담<br>당<br>관 | 통<br>제<br>관 | 총괄<br>조정<br>관 | 차장 | 본부<br>장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
| 1        | 복무관리            |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근무자 출장명령·복명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2        | 상황관리            |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재난 예보·경보 실시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3        | 대책본부<br>운영상황    |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| 4        | 피해조사<br>및 복구    |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지원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○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| 5        | 대책본부<br>회의      | 회의 소집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회의결과 통보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6        | 특별재난지<br>역 선포 등 |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○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○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
[별표 4]

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(제8조제1항제1호 관련)

□ 비상 1단계

1. 가동기준

가. 호우·대설: 호우·대설주의보(3개 시·군 이상 발효시)

호우·대설경보(1개 시·군 이상 발효시)

나. 태풍: 예비특보 발효시

다. 지진(해일)·화산 시 : 규모4.0 ~ 4.9(대책본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)

2. 실무반 편성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본 부 장         | 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차 장           | 행정부지사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총괄조정관         | 재난안전실장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통 제 관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담 당 관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실 무 반        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| 총 5+a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관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| 1)상 황 관 리<br>총괄반<br>(4+a) |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<br>재난상황관리팀<br>(4+a) | · 재난상황관리반(4)<br>- 재난안전상황실(2)<br>- 자연재난 총괄부서(2)<br>- 재난수습 주관부서(a)  |
|               | 2)협업<br>기능반(a)            | 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복지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환경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<br>도로과, 유기농산과, 축수산과,<br>자연재난과, 문화예술산업과,<br>건축문화과, 체육진흥과, 관광<br>항공과, 수질관리과, 투자유치과,<br>산림녹지과, 균형발전과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    | · 에너지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 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공보관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사회재난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교통정책과, 관광항공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서비스 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| · 보건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자치행정과   |
| 카) 사회질서 유지반   | · 충북지방경찰청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 | · 소방본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※ 근무방법

- 1) 상황관리총괄반 :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- 2) 협업기능 실무반 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

□ 비상 2단계

1. 가동기준

가. 호우·대설: 호우·대설경보(3개 시·군 이상 발효시)

나. 태풍 :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,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

다. 지진(해일)·화산 시 : 규모 5.0이상 (국지적인 피해 발생 시)

2. 실무반 편성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본 부 장            | 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차 장              | 행정부지사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총괄조정관            | 재난안전실장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통 제 관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        |   |   |
| 담 당 관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         |   |   |
| 실 무 반           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| 총 9+a+β명  |   |
|           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| 담당관(1)  |   |
|                  | 1)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8+a) | 가)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<br>전파, 재난상황관리팀<br>(5+a)   | · 재난상황관리반(5)<br>- 재난안전상황실(2)<br>- 자연재난 총괄부서(2)<br>- 재난수습 주관부서(a)<br>-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상황보고서작성팀<br>(1+a)  | · 자연재난 총괄부서(1)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(a)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<br>분석 평가팀(1+a)   | · 자연재난 총괄부서(1)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(a)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행정지원팀(1+a)   | · 총무과(1+a)  |
|                  | 2) 협업<br>기능반(a)         | 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| · 복지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| · 환경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지원반   | · 정보통신과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| ·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<br>도로과, 유기농산과, 축수산과,<br>자연재난과, 문화예술산업과,<br>건축문화과, 체육진흥과, 관광<br>항공과, 수질관리과, 투자유치과,<br>산림녹지과, 균형발전과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| · 에너지과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 홍보반   | · 공보관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| · 사회재난과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| · 교통정책과, 관광항공과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서비스 지원반   | · 보건정책과   |
| 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|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자치행정과   |   |
| 카) 사회질서 유지반      | · 충북지방경찰청               |   |   |
| 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    | · 소방본부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(β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주기상지청, 충북지방경찰청, 육<br>군제5019부대, 한국농어촌공사<br>북본부, 충주국토관리사무소, 보은<br>국토관리사무소, 한국도로공사 충<br>북본부 등 |   |

※ 근무방법

- 1) 상황보고서 작성반 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인력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- 2)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- 3) 행정지원반 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- 4) 협업기능 실무반 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□ 비상 3단계

1. 가동기준

가. 호우·대설: 광역적인 호우·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

나. 태풍: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

다. 지진(해일)·화산 시 : 규모 5.0이상 (대규모 피해 발생 시)

2. 실무반 편성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본 부 장         | 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차 장           | 행정부지사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총괄조정관         | 재난안전실장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통 제 관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         |  |   |
| 담 당 관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          |  |   |
| 실 무 반        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| 총 12+a+β명  |   |
|        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관(1)   |   |
|               | 1)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11+a) | 가)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상황관리팀 (7+a)  | · 재난상황관리반(7)<br>- 재난안전상황실(2)<br>- 자연재난 총괄부서(2)<br>- 재난수습 주관부서(2+a)<br>-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상황보고서작성팀 (1+a)  | · 자연재난 총괄부서(1)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(a)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(2+a)   | · 자연재난 총괄부서(2)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(a)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행정지원팀(1+a)  | · 총무과(1+a)  |
|               | 2) 협업<br>기능반(a)          | 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| · 복지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| · 환경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지원반  | · 정보통신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| ·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 도로과, 유기농산과, 축수산과, 자연재난과, 문화예술산업과, 건축문화과, 체육진흥과, 관광항공과, 수질관리과, 투자유치과, 산림녹지과, 균형발전과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| · 에너지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 홍보반  | · 공보관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| · 사회재난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| · 교통정책과, 관광항공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서비스 지원반  | · 보건정책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| · 자치행정과   |
| 카) 사회질서 유지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충북지방경찰청  |   |
| 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 | · 소방본부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(β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주기상지청, 충북지방경찰청, 육종군제5019부대, 한국농어촌공사 북본부, 충주국토관리사무소, 보은국토관리사무소, 한국도로공사 북본부 등 |   |

※ 근무방법

- 1) 상황보고서 작성반 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인력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- 2)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- 3) 행정지원반 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- 4) 협업기능 실무반 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[별표 5]

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(제8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가동기준

- 가.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
- 나.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
- 다.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

2. 실무반 편성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본 부 장         | 도지사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차 장           | 행정부지사                  |  |  |
| 총괄조정관         | 재난안전실장                 |  |  |
| 통 제 관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         |  |  |
| 담 당 관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         |  |  |
| 실 무 반        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| 총 12+a+β+γ명  |  |
|        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| 담당관(1)   |  |
|               | 1)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11명) | 가) 상황관리총괄팀(5명)   | · 재난안전상황실(2)<br>· 사회재난 총괄부서(1)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(2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수습상황파악팀(5명)   | · 사회재난 총괄부서(2)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(2)<br>· 안전정책과(1)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행정지원팀(1+a)  | · 총무과(1+a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2)협업<br>기능반(a)         | 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| · 복지정책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| · 환경정책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지원반  | · 정보통신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| · 시설관리부서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| · 에너지과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 홍보반  | · 공보관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| · 자연재난과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| · 교통정책과, 관광항공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서비스 지원반  | · 보건정책과, 동물방역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| · 자치행정과  |
| 카) 사회질서 유지반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충북지방경찰청  |  |
| 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 | · 소방본부                 |  |  |
| 재난대응협업반(β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충북지방경찰청, 육군제5019부대,<br>대전지방국토관리청, 한국가스<br>안전공사충북본부, 한국전력공사<br>충북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<br>파견 직원 |  |
| 현장지원반(γ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해당 재난관리 실·국 소속 직원  |  |

※ 근무방법

- 1)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2) 상황관리총괄반·재난대응협업반·현장지원반 구성: 재난유형별 재난규모, 수습 상황,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- 3) 근무방법: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**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**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(이하 “대규모재난” 이라 한다)의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 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 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**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도대책본부“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·구대책본부“라 한다)를 둔다.

**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**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

제3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“라 한다)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안전처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